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 자료제출목록

		2022. 9.	1. 시행							
채무자(인)										
※ 아래표의 해당 □ 란에 ∨ 표시하고 뒷면에 제출하는 서류를 순서대	로 첨부	하여 제출합니다.								
*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	의 주민	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	니한 것을							
제출합니다(다만,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표기하여야	합니다)									
※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										
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발급 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										
기관 관련 서류'의 '제출'란의 박스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그러한 자료가 아래 목록의 순번 1번부터 9번까										
지 제출해야 할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맨 오른쪽의 '10번 제출	' 란의	박스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
		케츠 무귀기나 10년								
1.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	제출	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	10번 제출							
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										
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										
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[주소변동내역(과거 주소 전체) 및 개명, 주민등록번 호 변동사항 포함]										
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										
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※ 가족과게 드로시하며 즈며서(기부즈며서 기조과게즈며서 호이과게즈며서	०१०६च	게즈며서 치야기이야고게즈며서)느	시 그							
※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(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)는 시, 구, 읍(면)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										
때 한 등 기록된게등록된지 및 구인센터 또는 경구인된모듈에서 필급 본들 구 있음 ※ 주민등록초본 등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가능한바,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										
		제출 못하거나	10번							
2.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- 과세증명서	제출	일부만 제출한 이유	제출							
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										
에 관한 것.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, 전국 단위로 발급)										
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										
※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시·구·읍·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	을 수 있	는바,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	광역시							
·도·시·군·구(지방자치단체인 구)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(이상의 주	느민등록지 전부에 대하여 발급받아이	i 함							
3.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- 자동차	제출	제출 못하거나	10번							
ሁ 세면 놋 쓰루 된던 시ㅠ ⁻ 시 장 사	세돌	일부만 제출한 이유	제출							
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(갑구, 을구 모두 포함)		□케다시청 어이(크라샤이 어이)								
	1	□해당사항 없음(차량소유 없음)								

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

채무자 소유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

- ※ 차량등록원부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, 차량등록원부에는 갑구 및 을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
- ※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,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·연식별 일 반시세표(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)를 제출할 수 있음

4.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- 부동산·임대차 관련				10번 제출	
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			□해당시	l항 없음(부동산소유 없음)	
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 는 자료			□해당시 □협조가 □기타(h항 없음(임차한 물건 없음) 부())	
대하여는 등기사형	사항 충전의 등기부등본을 지칭)는 등기소 또는 다 상증명서 대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제 [.] 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		-		
5.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- 재산 처분 관련		제출		10번 제출	
과거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부동 산이나 하나의 재 산 가액이 1,000만	①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(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내역 서 등 소명자료)		□해당사항 없음 (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,000 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음)		
원 이상의 재산을	② 계약서 사본		□협조기]부()	
처분한 경우	③ 영수증 사본		□기타(
6.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- 보험		제출		10번 제출	
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					
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·실효·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(손해/자동차/운전자/여행자·단체/주말휴일 상해 제외)					
발급 방법 및 유의 /	나항 ※ 조회내역 등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여	이지에서	계약 내	용 검색 후 출력할 수 있음	
7. 재산 및 소득 ₹	관련 서류 - 근로·영업·기타 소득				
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			제출	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	10번 제출
	① 사업자등록증명				
※ 오른쪽 ① ~	W THITE 8 8				
8은 해당 사실증 면에 미치어 바그	③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				
명에 대하여 발급 신청을 하고, 그에			T		
[선정물 야끄, 그에 [④ 소득금액증명				
따라 세무공무원이	④ 소득금액증명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				
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주는 서류를					
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주는 서류를 제출(현재부터 과	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				
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주는 서류를	(5)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(6)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				

				⇒ĭ	1초 무취하다		1021	
채무자가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		제출	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			10번 제출		
급여증명서(최근 2년분)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								
연금 / 생활보호대성			제출		출 못하거나 만 제출한 이유		10번 제출	
연금을 받는 경우에는	수급증명서							
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	에는 수급증명서							
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	는 자료							
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※ 사업자등록증명, 표준재무제표증명(개인, 법인)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휴업사실증명,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, 소득금액증명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, 폐업증명서,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(최근 2년분)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. ※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자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고, 연금 수급증명서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, 생활보호자 수급증명서는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								
8. 재산 및 소득 관	현 서류 - 계좌 등	제출		• - •	못하거나 세출한 이유		10번 제출	
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명의(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포함)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 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(금융기관별) 계좌 내 역, 계좌 상세내역서			□해당사항 없음(은행거래 없음) □협조거부() □기타()					
9.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- 이혼		제출		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			10번 제출	
최근 2년 이내에 이 혼에 따라 재산분여	①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(할)한 모든 재산의 내역							
(할)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, 위자	②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, 양육비부담조서			사항 없음 년 이내 이혼 사	├실 없음)			
료 등 명목에 관계없 이 오른쪽의 자료를 제출	③ 재판상이혼의 경우, 판결서, 조정조 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			- , , , , - , - , - , . , -				
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※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출 ① 시, 구, 읍(면)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: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②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로 아직 시, 구, 읍(면)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: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재판서의 등본(조정・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등본) 및 확정증명 제출 ③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의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, 구, 읍(면)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: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								
10. 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				제출	해당사항 없음			
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(예컨대,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등)								